

	<h2 style="margin: 0;">교육혁신센터규정</h2>	규정번호	3-7-3
		제정일자	2019.08.01.
		개정일자	2025.05.01.
		개정차수	4차
		소관부서	교무처 (교육혁신센터)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안산대학교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혁신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업무,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대학교육 혁신모델 연구 및 개발 지원
2. 역량기반 교육과정 정책 수립
3. 핵심역량 진단 및 성과분석
4. 직업기초능력 진단 및 성과분석
5. 역량기반 교육과정 분석 및 질 관리(CQI : 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, 이하 “CQI”라 한다)
6. 학과 역량기반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평가 지원
7. 삭제 <2025.05.01.>
8. 삭제 <2025.05.01.>
9. 삭제 <2025.05.01.>
10. AU역량 지수 분석 및 관리
11. 기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

제2장 조직 및 구성

제3조(센터장)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,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센터장은 센터 업무 전반을 총괄하며, 센터 소속 교직원을 지휘, 감독한다.

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4조(직원) ① 센터 운영을 위해 직원을 둘 수 있다.

② 직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관계 규정에 따른다.

제3장 위원회

제5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센터 운영의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교육혁신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교무처장과 전략기획처장을 당연직으로 하며, 10인 이내로 구성한다.

③ 위원회는 간사를 둘 수 있다.

제6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혁신센터장으로 한다.

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7조(임기)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기간으로 한다.

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③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제8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계획, 조사연구 및 자문할 수 있다.

1. 센터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
2. 센터 규정의 개·폐에 관한 사항
3. 기타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9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0조(소위원회) 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.

제11조(비밀유지) 위원회 업무에 관계한 교직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.

제12조(소요경비)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연구비, 수당, 기타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.

제4장 보 칙

제13조(세부사항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 년 8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제2조(기능)에 대하여는 2020 년 3 월 1 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 년 5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5 년 5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